

중앙대회 ('85. 7. 12)

산업보건좌담회

산업보건좌담회는 「중소기업의 바람직한 보건관리체제」를 주제로 하여, 앞으로의 산업보건사업 추진 및 집단보건관리에 대한 노·사·정 및 학계의 의견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 좌담회에서 발표된 각계의 의견과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간추려 실는다.



조규상 회장 :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의창 부장 : 노총측에서 사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용자측에서도 무성의 하여 왔읍니다만, 근로자측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졌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각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다 해도 주로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치중해 왔고 안전이나 보건에 대하여는 사실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재해 발생자가 15만명이고 경제적 손실로 볼 때 7천억원이 된다는 것을 사업주나 근로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용자나 근로자측이 보건이나 안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끔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이 보건문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지 않으면 노·사가 여기에 스스로 관심을 갖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볼 때 멀지 않으나 생각도 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노총도 노력을 하겠읍니다만 정부나 협회에서도 더욱 힘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진단문제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이 제

정된 것이 1953년이라 보니까 약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형식적으로 실시하거나 행정과정에 보코로 끝나는 사업장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총에서도 각급 산별 노조나 노동조합을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이행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해서 어떠한 질병자의 사후관리문제를 가지고 부당한 인사조치 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예도 있습니다. 건강진단문제도 중요하지만 질병자의 사후관리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윤 이사 : 근로자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방면에 모든 법령제도가 많이 나와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전보다 크게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진폐법 등 외향적으로는 많은 법제도가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제도와 현실과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제도가 아직까지 현장에서 뿌리박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이든 건강관리 측면이든 기업주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장은 이 모든 제도나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전문기구의 힘이 요구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사업장은 기업주들이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지역별 산업별 또는 집단적으로 한데 묶어서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여 집단보건관리 체제를 꼭 300명 이하로 봐야 하느냐 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아서 집단보건관리 대

상을 좀 더 폭넓게 봐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근로자 건강문제는 범이 있는데 안된다는 말만 하지 말고 한데 묶어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고, 아주 그것도 안되는 곳은 국가적인 책임하에서 지방자치 책임이나 산재보험으로 지원하여 내실있고 현실성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근로자 건강진단실시문제에 있어서도 노동부 보고용이다. 형식적이다. 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집단보건관리가 뜻깊은 것 같아 찬동하는 바이며, 이를 실시한다고 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지만 그중 한가지는 현재 축탁보건관리를 하는 분들과 어떻게 연계를 해 나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조규상 회장 : 산업보건의 잘되는 나라의 법령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법제도가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현실 내면적으로 볼 때 잘 안되는 문제가 있으나 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보건관리체제로 할 때 보건관리자들의 문제에 대해 외국의 예를 들면, 불란서에는 산업의라는 제도가 있는데 의과대학생 10% 정도가 이 시험에 합격, 자격을 취득합니다.

우리나라 축탁의 처럼 명목상으로 등록만 해놓고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유해부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근로자 30명 내지 50명 인원에 대하여 한달에 1시간씩 나가서 일을 해 줍니다.

집단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는 산업의들이 센터에 등록을 해 가지고 사업장에 나가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수당을 받습니다.

그 책임감도 명확하게 되었을 뿐더러 사업주와의 협력관계도 잘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협회에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도록 이런 제도를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신석규 국장 : 정부가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여러가지 발전적인 면도 있으나 또한 시행과정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6년까지는 모든 법령을 재검토하여 '85년부터 '88년까지 민간주도의 자율기반을 구축하고 '89년부터는 완전히 기업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해 가는 장기 기본방침에 있어 온갖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거론되었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 실시해 온 집단보건관리 체제를 분석 연구하여 전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앞에서 말한 제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와 보건담당자의 업무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보건담당자는 유자격자를 배치하도록 하여 수준을 높이겠으며, 이는 그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한 무자격자들을 안전보건담당자로 선임하여 일해온 실정이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장에 안전보건위원회를 현재 100인 이상에 두도록 했는데 50인 이상으로 확대 하겠으며 안전보건담당자도 위원으로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신고도 현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방사무소가 맡아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점도 분석하여 전문단체에 위임하는 방안도 재검토하여 시행령 개정안에 넣어 업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규상 회장 : 지금까지 각계의 의견을 모두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법령이나 제도를 자꾸만 만드는 것 보다는 간단한 제도라 하더라도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지키고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가 참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박영수 교수 (전북의대) :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는 예방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산재보험 잉여금이 많이 비축된 것으로 하는데 그 자금을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쓸 계획은 없는지요.

신석규 국장 : 산업재해가 통계수치를 보면 다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로 볼 때 약 7천억원이라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우리나라 총 GNP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예방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노사분규가 150건 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분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산업재해 근로자 60%가 30대 미만이라는 것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임금 1% 때문에 노사분규는 해도 재산과 생명이 연관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정기감독을 하지만 며칠동안 하는 척 하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면 도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문제는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1981. 12.31자로 만들어져 각종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금년 4월말로 볼 때 사업장이 14%로 증가하였고 근로자도 7% 증가한 데 비하여 현싯점에서는 재해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작년도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약 9억원 정도로서 0.5%에 불과합니다.

최소한도 3%에서 5%까지는 투자되어야 하는데 형편상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려면 결국 기업주 측에 보험금을 높혀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험금이 약 400억원이 있지만 보험을 종료시켜 모든 것을 청산한다면 연금환자를 위한 금액정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억원,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안전 위험기계 보호장치나, 개인보호구에 필요한 시설을 하는데 용자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업체 1,700개 사업장에 통보하였으나 작년부턴 이제까지 3억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조건도 5년거치, 2년상환으로 좋은 편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면서 지도해도 안된다면 강력한 조치를 하여 이끌고 가려 합니다.

김광종 교수 (고려의대) :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치료를 하는 것보다 16배이상 이득이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는 말했습니다. 산업보건사업은 사업주나 근로자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많이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총협회측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이사 : 보건문제에 있어서는 노·사·정 그리고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포함하여 4자회담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 지도하고 전문가들은 열심히 연구 노력하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분야에 책임성있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더욱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총에서는 보건에 대한 세미나, 모범사업장 방문이라든지 전문단체와 협조하여 사업주 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사업주들의 산업보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김병우 교수 (전남의대) : 집단보건관리 사례발표에 있어서 마산의 경우는 수출자유지역으로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더우기 외국인들의 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집단보건관리 체제가 성공적이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볼 때 사업장이 여러방향으로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도 과연 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김영희 소장 (마산산업보건센터) :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요구되고 사업장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솔선수범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사업주 스스로가 따라 주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윤명초 소장 (현대 환경관리소) : 마산의 집단보건관리 체제가 그렇게 잘 되었다면 현재 적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앞으로 정부계획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신석규 국장 : 마산수출자유지역은 특수한 시범지역으로서 법의 규정을 다소 벗어나 300인 이상 1,000명까지 산업안전보건정책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제도가 확대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명까지도 전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장은 제외하고는 보건관리대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중소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우리의 현실점을 생각해서 이런 제도를 전반적으로 실시토록 정부에서 적극 협력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이 얼마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법적으로 규정하여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세임 (해태제과(주)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에 대해 노총이 너무 무관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노총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근로자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산업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의창 부장 : 노총에서도 근로자 건강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노총이 관심을 갖는다고 어떠한 것이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생산 제조하면서 법

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이런것부터 노동부에서 감독기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노총에서도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널리 홍보 계몽하여 건강한 근로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깨닫도록 주지시켜 산업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조규상·회장 : 결론적으로 문영한 교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문영한 교수 : 보건관리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제도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르고 실천하도록 여러모로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완전한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건측면은 산업보건을 잘 함으로써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나 이러한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감에 있어 계속 연구 노력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하며 대대적이고 계속적인 홍보를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할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실천하여 질병없는 건강한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함이 살기좋은 복지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